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55
----------	-----

2024. 11. 25.(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18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산림국장)

가.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충북도의
녹색제품 소비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발전을 계속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본 동의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등에 의거, 지정기간 도래 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주요내용

- 대상사무 : 「녹색제품구매법」 제17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 위탁기간 : ' 25년 1월 1일 ~ ' 25년 12월 31일
- 수탁기관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4조의2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제12조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선정방식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름
- 소요예산 : 72백만원(국비 36, 도비36) ※ '24년 당초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무내용 :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환경부)」 제8조
 -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모·신청서 접수 ' 24년 12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의 ' 24년 12월
 - 지정 고시(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 24년 12월
 - 재위탁 운영 실시 ' 25년 1월 1일부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위·수탁이 만료되는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재위탁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모집하고,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감독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임.
-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업무는 전문성과 체계성이 요구되는 사무인 만큼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수탁기관의 선정에는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타당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충북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지표 등을 반영한 제반계획을 강구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건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55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를 적극 추진해야 하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의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및 국민은 녹색제품을 생산,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녹색제품 인증과 생산·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녹색제품 소비 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필요
-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반업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을 위한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5년 (1년간)

※ 단,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나. 위탁사무

-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지원
-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및 녹색매장 관리 등

다. 소요예산 : 7,200천원(국비 3,600, 도비 3,600)

라. 수탁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바.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민간위탁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아.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4년 12월

3. 참고사항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예(예정) 따라 수탁기관의 신청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국비 보조금 미교부 또는 보조금액 변동시 도비 보조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4.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7조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 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5천만원 이하 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참고자료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녹색제품 생산·소비 확대를 주도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역 내 녹색제품 인증 지원 및 수요처와의 연결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적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비 : 72,000천원(국비 36,000, 도비 36,000)
 - 산출근거 : 72,000천원×1개소 = 72,000천원
- 사업량 :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1개소
- 사업내용 : 녹색제품 인증지원 및 컨설팅,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녹색매장 관리 등
- 시행주체 : 공모추진 예정(기존센터 '24년 계약기간 종료)

< '24년도 센터 지정 현황 >

- ▶ 지정기관 : 청주녹색소비자연대(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88, 204호)
- ▶ 지정기간 : '24. 1. 1. ~ '24. 12. 31.
- ▶ 지정방법 : 공모
- ▶ 사업비 : 88,000천원(국비 44,000, 도비 44,000)

□ 향후계획

-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공모) : ~'24. 12.
-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 '25. 1. 1. ~ 12. 31.